##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68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 김문수・김우영・정동영

이용선 · 주철현 · 김 윤

김기표 • 박희승 • 이광희

박지혜 • 박범계 • 민형배

최민희 • 백승아 • 이기헌

조인철 의원(총16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고,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 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건설과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원자력이용시설과 국민안전 또는 환경 보호 사이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호 중 "건설에"를 "건설과 해체에"로, "기술능력을"을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운영에"를 "운영과 사고관리에"로, "기술능력을" 을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로 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5조의3(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원자력이용시설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원자력이용시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운영허가를 받은 자와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제1항·제20조제1항·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원
	자력이용시설과 국민안전 또는
	환경보호 사이에 과학적 인과
	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도 경제적・기술적으
	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안전
	과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
	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기준) 제10조제1항의	제11조(허가기준)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	1
자로 및 관계시설의 <u>건설에</u>	<u>건설과</u>
필요한 <u>기술능력을</u> 확보하고	<u>해체에기술능력 및</u>
있을 것	<u>재정능력을</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1조(허가기준) ① 제20조제1항	제21조(허가기준) ①
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	1
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u>운영</u>	<u>운 영</u>
<u>에</u> 필요한 <u>기술능력을</u> 확보하	<u>과 사고관리에기술</u>
고 있을 것	<u>능력 및 재정능력을</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의3(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원자력이용시설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원자력이용시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 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을 검토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 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 그 밖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